

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안 번호	10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3. 6. 27.

발 의 자 : 황 정 호의원 외 8인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7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.

2. 주 문

- 가. 출석요구기간 : 2003. 7. 7(월) ~ 7. 9(수) 《3일간》
- 나. 출석장소 : 목포시의회 본회의장
- 다. 출석대상 : 시장 및 목포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
- 라. 출석내용 :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